

독일어권 국가들의 자살보도 기준



글 김세환
독일 만하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독일어권 국가들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매년 11,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약 10만 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매년 사망하는 자살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매년 1,300여 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지속적인 건강상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자살자의 주변인들도 이와 관련된 정신적 질환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독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살에는 6명 이상의 가족 및 친지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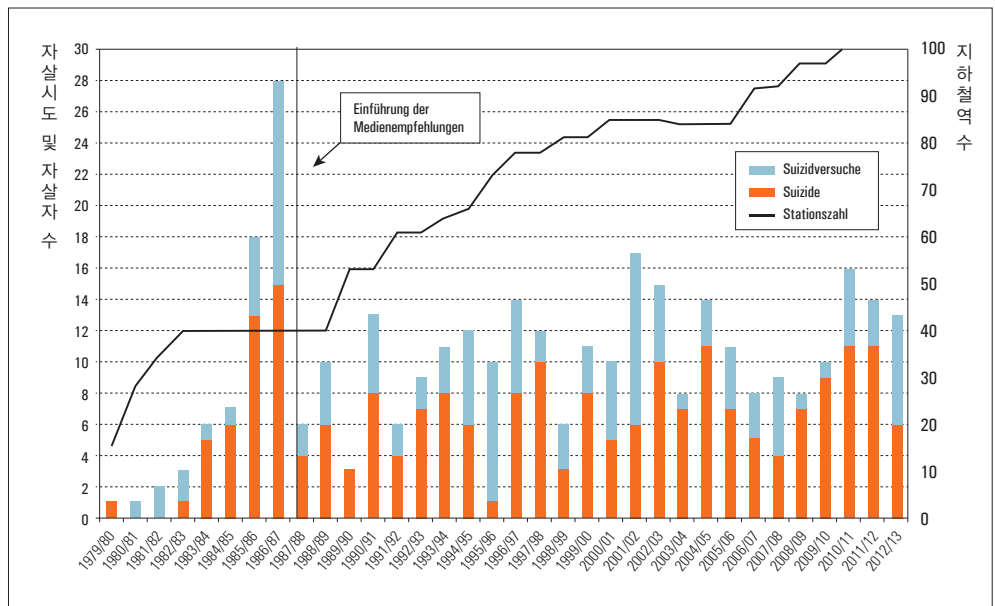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은 ‘살고 싶다’는 감정과 ‘죽고 싶다’는 충동 사이에서 끊임없이 정신적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높은 양면성에 대한 내적 갈등에 빠져들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상반된 감정 중에서 특정 방식을 선택하여 따르게 되는데, 이때 언론보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정보를 확대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학술적, 사회적으로 이미 검증되었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긍정적이기도 하다. 자살보도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베르테르(Werther) 효과’가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발간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소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쇄 모방 자살에서 유래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자살 관련 다큐멘터리 “어느 학생의 죽음(Tod eines Schülers)” 이후,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철도 투신자살이 175%나 증가하였

1) Deutsche Gesellschaft für Suizidprävention, www.suizidprophylaxe.de

2)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Suizid und Suizidprävention in Österreich Basisbericht 2013*.

다.³⁾ 반면 같은 기간 약물을 비롯한 다른 방식을 통한 자살률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파라세타몰(Paracetamol) 과다복용에 따른 선정적 보도 이후 동일한 방식의 자살률이 기사 게재 첫 주에 17%, 둘째 주에 9% 증가하였으며,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20%가 해당 기사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⁴⁾ 반면 자살보도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파파게노(Papageno) 효과’로 불리는 것으로, 올바르고 신중한 보도가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것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인공 파파게노가 자살하려는 순간 요정들의 희망 이야기로 죽음 대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에서 착안한 것이다. 자살보도의 ‘파파게노 효과’로는 오스트리아 빈(Wien)의 지하철 투신자살 감소가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80년대 중반 지하철 투신자살에 대한 선정적 보도가 동일 방식의 모방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87년에 지하철 자살에 대한 신중 보도 권고안이 도입된 이후 빈의 지하철 자살이 줄어들었으며, 이후 지하철역과 승객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자살률이 소폭 줄어든 수준에서 유지되는 데 기여하였다.⁵⁾



1980-2013 빈 지하철 투신자살과 자살시도(6)7)

- 3) Ruddigkeit, A. (2010). Der umgekehrte Werther-Effekt: Eine quasi-experimentelle Untersuchung von Suizidberichterstattung und deutscher Suizidrate, *Publizistik*, 55, 253-273.
- 4) Initiative zur Prävention von Suizid in der Schweiz, Medien und Suizid: ein Leitfaden für Medienschaffende, IPSILON.
- 5) Etzersdorfer, E. & Sonneck, G. (1998). Preventing suicide by influencing mass-media reporting: The Viennese experience 1980-1996,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4, 67-74.
- 6) Tomandl, G., Sonneck, G., Stein, C., & Niederkrotenthaler, T., Leitfaden zur Berichterstattung über Suizid, Kriseninterventionszentrum, p.9
- 7) Suizidversuche: 자살시도, Suizide: 자살, Stationszahl: 지하철역 수, Einführung der Medienempfehlungen: 보도 권고안 도입

독일어권의 자살 관련 보도 기준

언론보도가 자살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자살보도는 여전히 선정적이고 불확실하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어권 국가들은 자살 관련 보도 기준을 언론규약에 삽입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자살을 신중하게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어권 국가들에서는 우리의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하는 언론평의회(Presserat)가 자살 관련 보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독일의 언론평의회는 언론규약(Pressekodex)에서 규정한 인격권 보호(8조) 조항⁸⁾의 하위로서 자살 관련 보도 기준을 제시하였다. 언론규약 8조에서 규정한 인격권 보호를 위해 독일 언론은 개인의 사적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언론은 그 행위를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실명을 언급해야 하는 보도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해가 해당 당사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적 이해보다 압도적으로 커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순히 선정적 이유로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살보도는 위에서 언급한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규정되고 있다. 언론규약 8조 7항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 관련 보도 기준은 신중함에 있다. 특히 자살자 혹은 그 주변인의 이름을 공표하거나 사진을 제공하고, 자살 혹은 자살시도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부수적 현상을 서술할 경우에 신중함을 요구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언론평의회 C(좌측부터)

자살을 인격권 보호의 하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는 자살을 인격권 보호와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보도의 기준으로 신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양국이 유사한 부분이다. 오스트리아 언론규약(Ehrenkodex) 12조¹⁰⁾의 자살보도 규정에 따르면 자살과 자해, 혹은 자살시도와 자해시도에 대한 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모

8) Die Presse achtet das Privatleben des Menschen und sein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st aber sein Verhalten von öffentlichem Interesse, so kann es in der Presse erörtert werden. Bei einer identifizierenden Berichterstattung muss das Informationsinteresse der Öffentlichkeit die schutzwürdigen Interessen von Betroffenen überwiegen; bloße Sensationsinteressen rechtfertigen keine identifizierende Berichterstattung. Soweit eine Anonymisierung geboten ist, muss wirksam sein.

9) Die Berichterstattung über Selbsttötung gebietet Zurückhaltung.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ie Nennung von Namen, die Veröffentlichung von Fotos und die Schilderung näherer Begleitumstände.

10) Berichterstattung über Suizide and Selbstverstümmelung sowie Suizidversuche und Selbstverstümmelungsversuche gebietet im Allgemeinen große Zurückhaltung. Verantwortungsvoller Journalismus wägt- auch wegen der Gefahr der Nachahmung- ab, ob ein überwiegendes öffentliches Interesse besteht und verzichtet auf überschießende Berichterstattung.

방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가 압도적으로 공공의 이해를 불러일으키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스위스 언론평의회는 언론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침(Richtlinie zur Erklärung der Pflichten und Rechte der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 이하 지침) 7조 9항¹¹⁾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보도할 수 있는 자살 사건에 대해서, 해당 자살이 커다란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우, 공적 삶을 살았던 인물, 덜 알려진 인물이라도 해당 자살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자살자 혹은 그 가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경찰에 의해 인지되어 보고된 범죄와 관련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거나 해당 자살로 인해 사회적 논쟁이나 여론의 환기가 발생할 경우, 소문과 소송으로 인해 언론보도를 통해 이를 정정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살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자살자의 사적 정보나 고인을 비하하는 어떠한 것들도 포함해서는 안 되고,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자살방식과 도구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하도록 명시하였다.

자살보도 관련 언론중재 사례

언론규약의 자살보도 규정이 실제로 자살보도에 대한 중재 및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월 30일자 오스트리아 크로넨짜이퉁(Kronen Zeitung) 10면에 게재된 “집단 괴롭힘이 13세 소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Mobbing trieb 13-jähriges Mädchen in den Selbstmord)” 기사에 따르면 자살한 13세 소녀가 동급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자살 원인을 집단 괴롭힘으로, 마찬가지로 13세 소녀의 죽음에는 동급생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튿날 12면과 13면에 게재된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 쇼크가 깊게 자리하였다(Tod nach Mobbing: Der Schock sitzt tief)” 기사에서는 13세 소녀의 자살에 대한 추가 보도가 게재되었고, 교내 집단 괴롭힘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기술되었다.

사흘째 28면 독자 의견란에 게재된 “죽으면 해방될까(Der Tod als Erlösung)”에서는 자살 원인으로 집단 괴롭힘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누구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멈

11)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 üben bei Suizidfällen grösste Zurückhaltung. Über Suizide darf berichtet werden:

- sofern sie grosses öffentliches Aufsehen erregen;
- sofern sich Personen des öffentlichen Lebens das Leben nehmen. Bei weniger bekannten Persönlichkeiten muss der Suizid zumindest in einem vermuteten Zusammenhang mit öffentlichen Angelegenheiten stehen;
- sofern der Verstorbene oder seine Angehörigen von sich aus and die Öffentlichkeit gelangt sind;
- sofern sie im Zusammenhang mit einem von der Polizei gemeldeten Verbrechen stehen;
- sofern sie Demonstrationscharakter haben und auf ein ungelöstes Problem aufmerksam machen wollen;
- sofern dadurch eine öffentliche Diskussion aufgelöst wird;
- sofern Gerüchte oder Anschuldigung im Umlauf sind, die durch die Berichterstattung richtiggestellt werden.

In allen Fällen beschränkt sich die Berichterstattung auf die für das Verständnis des Suizids notwendigen Angaben und darf keine intimen oder gar herabsetzenden Einzelheiten enthalten. Um das Risiko von Nachahmungstaten zu vermeiden, verzichten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 auf detaillierte, präzise Angaben über angewandte Methoden und Mittel.

추라고 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 그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본 원칙을 집에서 배우지 못했다(Niemand konnte oder wollte die quälenden Kinder in ihrem vernichtenden Verhalten stoppen, kinder, die in ihrem eigenen Elternhaus nie die Grundprinzipien einer funktionierenden sozialen Gesellschaft gelernt haben)”와 “엘리자베스는 평화를 찾았고, 그녀는 평화 속에서 영면하기를 원했으며, 그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지옥에서 살 것이다(Elisabeth hat ihren Frieden gefunden, und sie möge in



크로넨짜이퉁의 13세 자살보도 기사(온라인)

Frieden ruhen, ihre Peiniger haben ab jetzt die Hölle auf Erden)”라는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는 해당 기사들에서 자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묘사되었기 때문에, 모방 자살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았다. 언론평의회는 비극적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세한 보도를 포기하는 대신에 어떻게 13세 소녀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는지를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독자의 의견표명을 통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로 알려진 모방자살의 위험성을 제공한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기사는 오스트리아 언론규약 11조에서 규정한 자살보도의 신중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¹²⁾

한편, 2014년 6월 3일 독일 언론평의회는 여성 바이애슬론 선수의 자살과 관련된 벨트(Welt)의 보도에 경고(Rüge)를 결정하였다. 해당 신문은 2회에 걸친 기사를 통해 자살한 선수의 개인 정보를 자세히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그녀의 정신병력, 교통사고 이력, 교우관계 등이 포함되었다. 언론평의회는 이를 통해 자살자의 사적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은 부모와 선수 사이 불화가 간접적으로 자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였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러한 기사들이 언론규약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 보호, 특히 자살보도에서 신중함을 주문하고 있는 언론규약 8조 7항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였

12) http://www.presserat.at/rte/upload/entscheidungen_2013/entscheidung_2013_s_003_ii_06.05.2013.pdf

다. 특히 이것은 유사한 부수효과를 동반하는 것에 적용되는데, 발생 가능한 모방 자살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³⁾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0년 청소년 잡지 브라보걸(Bravo Girl)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하였다. 해당 잡지는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한 끝에 자살한 15세 미국 소녀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면 “그녀는 방에서 나가며 길고 화려한 스카프를 쥐고 있었다. 조심스레 그것으로 매듭을 만들었다. 훌쩍한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방에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슬픔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창백한 뺨으로 눈물이 흘렀으며, 그녀는 한숨을 쉬곤 목을 매달았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기에 죽기로 하였다.”라는 단락이 있다.¹⁴⁾

이에 대해 언론평의회는 해당 기사가 언론규약 8조와 11조를 위반하였고, 자살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해당 기사는 언론규약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의 목적으로 자살을 보도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였고, 언론규약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선정 보도 조항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자살자와 집단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보도에서는 관련자들의 강력한 익명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언론평의회는 해당 기사의 편집을 엄중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언론 윤리 측면에서 독일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기에 죽기로 하였다”는 표현의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편집진의 불확실한 단정이 기사에 개입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실제로 자살자가 자택 계단에서 목을 매었으며, 이 과정에 대한 목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에 있는 듯 보도한 것은 사실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잡지사의 법률대리인은 소녀의 자살이 이미 미국 법정에서 다루어졌으며, 미국에서 법률안 개정을 이끌어낼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사건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소녀의 부모들이 유사 사건의 방지를 위해 자의로 사적 영역을 공개하였다는 점을 들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사가 감정적으로 기술되었지만, 아름다운 소녀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선입견을 반박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일 언론평의회는 잡지사의 반론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13)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Thema_des_Monats/Pressemitteilung_DPR_Beschwerdeausschuss-Sitzung_03.06.2014.pdf

14) “Wie ferngesteuert geht Phoebe rauf in ihr Zimmer, greift sich einen langen, bunten Schal. Vorsichtig bindet sie ihn zu einer Schlinge. Ihre schmale Finger zittern. Unendlich traurig fällt ihr Blick noch ein letztes Mal in ihr Mädchenzimmer. Tränen tropfen von ihren blassen Wangen. Phoebe seufzt. Dann erhängt sie sich. Phoebe wollte sterben, weil sie zu hübsch war.”

따라 가장 강력한 제재 방안인 공개 경고를 결정하였다.¹⁵⁾

마지막으로 드레스드너 모르겐포스트(Dresdner Morgenpost)는 2012년 1월 2일자 1면에 “젊은이(17)가 기차에 몸을 던지다 - 죽음(Junge(17) warf sich vor Zug - tot)”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해당 기사는 자살을 자세하게 묘사하였고, 자살 동기에 대한 추측성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사망 직전 젊은이의 부상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였다. 언론평의회는 이에 대해 언론규약 8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중보도의 의무를 침해했다고 보고 해당 언론에 대한 공개경고를 결정하였다.¹⁶⁾

독일의 자살보도 권고안

독일 자살예방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Suizidprävention)는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권고안이 독일 언론평의회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국가 자살방지 프로그램(Nationales Suizid Prävention Programm)’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평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권고안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규약을 뒷받침하는 주요 보도 지침으로 가치를 지닌다.

독일 자살예방협회가 ‘국가 자살방지 프로그램’ 중 언론 관련 대책으로 제시한 자살보도 권고안은 일반 자살보도, 유명인 자살보도, 인터넷 자살커뮤니티 보도 등의 세 가지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유명인 자살보도와 인터넷 자살커뮤니티 보도 권고안은 일반 자살보도 권고안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른 특정 보도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일반 자살보도 권고안을 살펴보면 기사작성, 자살 예방보도, 가족 및 지인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살 관련 기사는 언론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중 보도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권고안은 자살보도에서 자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피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헤드라인 혹은 1면에 자살자가 등장하거나, 특별히 ‘볼 만한 것’ 혹은 ‘이상한 것’으로 자살을 강조, 관련자의 사진을 게재하고 유서를 공개하는 것, 자살을 이해 가능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묘사하거나 심지어 긍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을만한 것으로 묘



2012년 1월 2일자 드레스드너모르겐포스트 전면

15) <http://www.presseportal.de/pm/14918/1683614/mehr-schutz-fuer-opfer-presserat-ruegt-namen-und-fotos-unzulaessig>

16) <http://www.presseportal.de/pm/14918/2217766/opfer-geniessen-besonderen-schutz-drei-ruegen-wegen-verstoessen-gegen-persoennlichkeitsrechte>

사하는 것, 자살할 만한 무엇 혹은 누군가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자살을 로맨틱하거나 이상적인 것으로 묘사하거나, 자살 방법과 장소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빈번하게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를 거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자살 예방보도에 대한 권고안으로는 자살을 정신적 문제의 표출로 기술하고, 자살시도의 위험성과 그 이면에 남겨진 부작용을 제시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징후와 자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위험 요인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지역 혹은 전국 단위의 자살예방 지원기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에 대한 인터뷰와 관련해서 그들의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자살 혹은 자살시도는 당연히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안겨준다. 그들은 슬픔에 빠지고, 부채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무기력함 등을 느끼며 고인의 자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따라서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 대한 심리학적 대처상황과 같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고, 인터뷰 시 언론인은 그들의 발언을 자살 혹은 자살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정신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¹⁷⁾

둘째,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보도 권고안은 ‘베르테르 효과’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 유명 인사가 자살할 경우 어느 때보다 모방자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도의 신중함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유명인이 자살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유명인의 자살일지라도 해당 사건이 1면 혹은 헤드라인 뉴스에 배치될 만한 공공의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뉴스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살방법과 장소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거나 사진을 통해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자살방법과 장소를 공개하는 것은 유명인을 따라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살 장소가 ‘추모공간’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모방 자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유명인의 자살방법을 ‘확실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나 ‘아름답게’ 죽은 것으로 제시해서도 안 된다.

보도 어휘에서 자살(Suizid/Selbsttötung)로 보도해야 하며, 자기살해(selbstmord)나 자유로운 죽음(Freitod)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¹⁸⁾ 자살은 범죄가 아니므로 자살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유추될 수 있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보도 어휘의 신중함은 유사하게 ‘결산자살(Bilanzsuizid)’이라

17) http://www.suizidpraevention-deutschland.de/fileadmin/user_upload/Flyer/pdf-dateien/NASPRO-Medienempfehlungen-2010.pdf

18) 제기된 단어들은 모두 한국어로 ‘자살’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어마다 뉘앙스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면 ‘Suizid’는 영어 ‘suicide’, ‘Selbsttötung’은 영어 ‘self-death’, ‘Selbstmord’는 영어 ‘self-murder’, ‘Freitod’는 영어 ‘Free-death’에 해당한다. 결국, 앞의 두 개는 가치중립적이지만, 뒤의 두 개는 죽음을 결정하는 자살자의 의지를 강조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하기를 권고하는 것이다.

는 개념에도 적용된다. 해당 개념은 자살자가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합리적 고려하여 발생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살은 정신적 위기이자 심각한 내적 갈등의 최종점이지 자신의 처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로써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결정이라는 점은 자살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유명인이 자살한 경우 언론은 유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다. 하지만 유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자살자들은 자살을 앞둔 불안한 정신적 상황에서 유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유서를 공개하면 자살자의 이러한 심리가 고스란히 대중에게 전달되어 자살자와 관련 있거나,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을 시도하려는 감정을 강화시킨다.

유명인의 자살 원인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피해야 한다.

언론은 자살의 원인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살은 내적으로 복잡하고 위협하게 전개되는 판단의 최종점이자, 자살자들이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여기는 심리적 상황이다. 어떠한 하나의 요인 혹은 하나의 심리적 이유로 자살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 이유에 대한 단순화는 삼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일반적 진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자살에 대한 일반적 사실과 요인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자살로 이어지게 한 고인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⁹⁾

셋째, 인터넷 자살커뮤니티에 대한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자살커뮤니티로부터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동하는 커뮤니티의 명칭과 세부사항에 대해 보도하면 안 된다. 특히 해당 커뮤니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커뮤니티 이용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자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커뮤니티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사화를 포기한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짐작 혹은 실제로 발생하는 자살 예고에 대한 공지를 기사화하지 않으며, 모방 자살자가 커뮤니티에서 인정 혹은 동정을 받지 않도록 자살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이용이 자살을 결정



독일자살예방협회의 자살보도 권고안

19) http://www.suizidpraevention-deutschland.de/fileadmin/user_upload/Flyer/pdf-dateien/NASPRO-Medienempfehlungen_-_Suizide_bekanntere_Personlichkeiten.pdf

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 자살에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인터넷 자살커뮤니티에만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모방 자살의 가능성과 자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외에도 인터넷 자살커뮤니티에 대한 보도에서 심리학자 혹은 전문적인 예방 커뮤니티에 대한 기사를 동시에 게재하고, 온라인에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언 및 정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공지해야 한다.²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자살보도 권고안

오스트리아 자살예방협회(Österreichische Gesellschaft für Suizidprävention)는 위기개입센터(Kriseninterventionszentrum)와 공동으로 자살보도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권고안은 2008년 완성된 후, 2014년 6월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독자들의 주목을 끌 만한 배치를 피하도록 권고하였다. 자살보도를 전면에 배치한다거나, “OO에서 연쇄 자살”과 같은 선정적 헤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되고, 표제어로 “사랑 때문에 자살하다”와 같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둘째, 자살자에 대한 상세한 보도를 피해야 한다. 자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사회적 지위, 생활 조건 등에 대한 상세 보도는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살자의 이름, 사진, 경력, 개인 정보 등은 보도해서는 안 되고, 유서 역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자살 방법과 장소에 대한 상세한 보도를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거론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도구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또한, 약물명과 같이 자살에 이르도록 한 제품의 명칭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자살을 모의한 인터넷 자살커뮤니티의 명칭과 접속 방법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자살 장소 역시 명시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연쇄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를 공개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장소를 자살하기 쉬운 장소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도 삼가야 한다.

넷째, 자살을 표현하는 보도 어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종 출구로서 자살(selbstmord)” 혹은 “그것은 자기살해자(Selbstmörder)”와 같은 어휘 대신에 “자살(Suizid, Selbsttötung)”, 혹은 “자살로 인한 사망(starb durch Suizid)”, “스스로 목숨을 끊다(nahm sich das Leben)”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자살 이유를 단순하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혼으로 자살”, “과도한 부채로 투신”과 같이 자살을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살은 다양한 요인이 복

20) http://www.suizidpraevention-deutschland.de/fileadmin/user_upload/Flyer/pdf-dateien/Empfehlungen-Suizidforen.pdf

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고 간략한 자살 원인에 대한 보도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방자살의 충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단순화는 헤드라인으로 제시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자살을 낭만적이거나 영웅적 행위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영원한 안식에 놓이다”와 같은 표현이나, “그의 삶만큼 죽음도 특별하다”라는 식의 묘사는 개인의 비극을 사회적 신화로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출된 공적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들이 자살하게 된 복합적 이유에 대한 균형감 있는 보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자살예방협회는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추천할 만한 기사 작성 요령도 제시하였다. 먼저 구체적 대안이나 해결 방식을 제공하고 권고하였다. 자살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의 인터뷰나 구체적 지원 방안과 같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살시도자들로 하여금 평정심을 유지하게 기여한다. 또한, 전문적 도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전문기관의 긴급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손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보도하도록 권고되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미디어 캠페인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고, 자살에 대한 특집 기사를 통해서도 가능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살 위험에 대한 사전 경고를 알리는 것이다. 자살 전에 발생하는 각종 위기 징후를 기사화함으로써, 특정인의 주변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자살 시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²¹⁾

한편,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자살예방 이니셔티브(Initiative zur Prävention von Suizid in der Schweiz)가 자살보도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권고안은 스위스 언론평의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지침이다.

해당 이니셔티브에서는 높은 자살률이나 자살확산율과 같이 특정 통계로 자살을 일반화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계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통계치를 동반한 보도에서는 의료당국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같이 제시해야 하며, 반드시 신뢰할 만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성급한 견해를 제시해서는 안 되고,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상적이고 차분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자살보도는 신문 전면 특히, 상단부에 배치해서는 안 되고, 헤드라인 혹은 표제에는 ‘Selbstmord’나 ‘Suizid’ 어휘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자나 자살 장소에 대한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다.

반면 모방 자살과 관련하여 언론은 자살 행위를 영웅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21) <http://www.suizidpraevention.at/pdf/leitfaden.pdf>

자살 방식과 과정에 대해 기술해서는 안 되고, 자살 장소를 신비롭거나 미스터리한 공간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자살 이유를 낭만적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고, 자살에 이용한 약물과 복용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니셔티브는 '베르테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살 위험의 배경 정보를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공지하고, 자살 경고 징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권고하였다.²²⁾

결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독일어권 국가들은 자살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언론평의회에서는 언론 규약 혹은 지침에 자살보도 규정을 명시하였다. 독일어권 국가들의 자살보도 규정은 기본적으로 신중 보도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모방 자살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살보도에 대한 중재 혹은 제재 역시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자살자의 개인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방 자살의 예방을 위해 자세한 묘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자살보도 권고안은 전국 단위의 자살예방 기관에서 작성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언론평의회에서 규정한 신중 보도에 대한 구체적 기사 작성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어권 국가들의 자살보도는 자세하게 보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자살이라는 정신적 병리이자,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독일어권 국가들의 언론 지침으로 자리하고 있다. 신중한 보도를 통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들 국가의 언론 지침과 보도 권고안이 한국 사회와 언론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22) Initiative zur Prävention von Suizid in der Schweiz, Medien und Suizid: ein Leitfadens für Medienschaffende, IPSILON.